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. 9. 10 선고 2015가단140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8. 20.

판결 선고 2015. 9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전 205㎡ 중 6/110 지분에 관하여 1985. 12. 26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근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송송용

별지